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장애인평생교육법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364호)

2024. 1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4
1. 총괄적 검토	4
가. 제정의 필요성	4
나. 법률안의 구성체계	9
2. 주요 조문 검토	13
가. 제1장 총칙	13
나. 제2장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22
다. 제3장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32
라. 제4장 장애인평생교육기관	37
마. 제5장 장애인평생교육사	44
바. 제6장 보칙	49
사. 부칙	5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진선미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0.

3. 회부연월일 : 2024. 12. 11.

II. 제안이유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계속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기에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님.

하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은 미흡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으며 평생교육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에 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내용이 달라야 하지만,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음.

이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평생학습의 실현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고용·복지 등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보편적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연도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시행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10조).

라.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평생교육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 다. 장애인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및 시·군·구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바. 장애인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개인별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장은 수립·운영 결과를 매년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22조).
- 사.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하고,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을 지정함(안 제24조 및 제25조).

IV.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의 필요성

현행 「평생교육법」은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¹⁾과 「교육기본법」²⁾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아울러,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 제5조³⁾제2항

1)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④ (생략)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평생교육) 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3)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

및 제3항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제19조의2(국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등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⁴⁾

이러한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립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의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추진 과제들이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음.

특히, 장애인의 경우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바,⁵⁾ 교육부는 2020년부터 지역에 기반한 장애인의 역량개발 지원 및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시·군·자치구를 지원하는 내용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시행하는 등 최근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참고로, 2020년 당시 10개 도시가 지정되었으나 2024년 현재 기준 82개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운영됨.

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2016년까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일원화된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을 개정(2016. 5. 29.)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됨.

5) 2022년 기준 대졸 이상 비율: 전체인구 40.3%, 장애인 14.1%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 현황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장애인평생 학습도시 수	10	19	32	70	82

자료: 교육부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으로,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32.3%로 조사된 데 비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4% 수준임⁶⁾⁷⁾.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확대 및 강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임.

< 장애인구 현황 >

구분	2011	2014	2017	2020	2023
장애인 추정	2,683,477	2,726,910	2,668,411	-	-
등록장애인	2,519,241	2,494,460	2,545,637	2,623,201	2,646,922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6) 전체 인구 평생교육 참여율(교육부,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 2017년 34.4% → 2020년 40.0% → 2023년 32.3%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보건복지부, 장애실태조사)

: 2017년 1.5% → 2020년 0.9% → 2023년 2.4%

7) 참고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삶패널조사(2022)에 따르면,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중 “고령 등의 이유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서(56.6%)”가 1위로 집계되었으며, 뒤이어 “자신의 장애로 인한 치료(20.9%)”, “시간이 없어서(8.9%)”, “참여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4.7%)” 등의 응답이 있었음.

이에 제정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함과 아울러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평생학습의 실현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고용·복지 등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보편적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의 규정 중 상당 부분이 현행 「평생교육법」 상의 규정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2건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⁸⁾이 발의되어 수차례 논의된 바 있는데, 당시 공청회⁹⁾에서 논의된 별도 입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요약하면,

입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① 현행 규정과 내용상 차이가 크지 않고, ②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은 입법을 통한 지원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지원과 인력 지원이며, ③ 제정안에 따를 경우 일반 평생교육 체계와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가 구분되어 장애인

8)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9596호)

「장애인평생교육법안」(조해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661호)

9)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교육위원회(2023년 5월 17일) 회의록 참고

과 비장애인의 통합을 저해하고 낙인효과를 발생시키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비해 입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① 현행 「평생교육법」 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통합과 차별이 개선되지 않아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지원 강화를 위하여는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하고, ② 현재의 일반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이 낮은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과 내용 구성, 시설기준 설정 등이 필요하므로 세분화와 특별화가 필요하며, ③ 「평생교육법」에 따른 추진·전달체계만으로는 현장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등의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따라서, 현행 「평생교육법」과 별도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특수성 및 현행법 체계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실태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아울러 비장애인과 통합교육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입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나. 법률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은 6개의 장, 37개의 본칙, 4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칙의 37개조문은 총칙규정(6개조문), 실체규정(24개 조문), 보칙(7개 조문)으로 구분됨.

한편, 제정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평생교육에 관한 일반법인 「평생교육법」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제정안의 일부 내용은 「평생교육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바, 법률 제정 여부에 따라 「평생교육법」의 정비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제정안은 부칙 제4조(다른법률의 개정)를 통해 「평생교육법」 일부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 있음.

장애인평생교육법안	평생교육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장애인의 평생교육권)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교육과정 등)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제2장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장애인평생교육 통계·실태조사 및 연차 보고서)	제9조의2(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등)

장애인평생교육법안	평생교육법
제9조(장애인평생교육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제10조(연도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1조(시·도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제12조(시·군·구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제14조(시·군·구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제14조(고용·복지와의 연계 지원)	
제3장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제15조(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9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16조(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운영)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제17조(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21조의4(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제23조(학습계좌)
제4장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1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제28조의2(평생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19조(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4조(준용 규정)
	제34조의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장애인평생교육법안	평생교육법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제20조(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운영)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제38조의3(신고 등의 처리절차)
제21조(장애인평생교육과정)	
제22조(개인별교육지원계획 수립·운영 등)	
	제6장 문해교육
제23조(장애인 문해교육의 실시 등)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40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제5장 장애인평생교육사	제4장 평생교육사
제24조(장애인평생교육사)	제24조(평생교육사)
제25조(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제26조(장애인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제26조의2(실태조사)
제27조(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28조(인권 친화적 장애인평생교육 환경 조성 등)	
제29조(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제30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제7장 성인진로교육
	제40조의3(성인진로교육의 실시)
	제8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제6장 보칙	제9장 보칙
제31조(행정처분)	제42조(행정처분)
제32조(지도·감독)	제42조의2(지도·감독)
제33조(청문)	제43조(청문)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6조(벌칙)	제45조의2(벌칙)
	제45조의3(벌칙)
제37조(과태료)	제46조(과태료)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편, 제정안의 구성체계와 관련하여 제1장 “총칙” 중 안 제5조(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¹⁰⁾는 해당 조문의 내용상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4장으로 조문 위치를 이동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제4장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위치하고 있는 제22조(개인별교육지원계획 수립·운영) 및 제23조(장애인 문해교육의 실시 등)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제4장의 제목을 “장애인평생교육기관 등”으로 수정하고,

제5장 “장애인평생교육사”의 경우에도 안 제27조(장애인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안 제28조(인권 친화적 장애인평생교육 환경 조성 등), 제29조(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내용이 장애인평생교육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5장의 제목을 “장애인평생교육사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10)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제5조(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 ①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학습지원인력, 이동지원, 정보접근지원 등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주요 조문 검토

가.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1) 목적 및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안 제1조 및 제3조)

제정안 제1조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 제정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애인의 평생교육권)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에서 목적 규정은 해당 법률의 해석지침이 되므로 입법의 취지와 핵심 사항을 종합적·포괄적으로 표현하여 각 조항의 운용과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함.

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평생학습의 실현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고용·복지 등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보편적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한편, 제정안 제3조는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제도 등의 본질적인 지향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2) 정의(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제18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나. 제19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4.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장애인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제정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장애인”, “장애인평생교육”,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11)에 따른 사람으로(제1호), “장애인평생교육”을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12)에 따른 평생교육으로(제2호),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제3호),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13)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음(제4호).

제정안 제2조 정의 규정 중 제3호(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과 제4호(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관하여 살펴보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장애인평생교육기관”간의 개념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두 개념을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11)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12)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13)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정안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안 제18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안 제19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정의됨과 동시에 안 제4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로서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됨.

특히, 제정안 제1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와 제19조(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조문 위치가 제5장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범주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아울러, 「평생교육법」¹⁴⁾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평생교육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¹⁵⁾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

14)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15) 「평생교육법」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고 있는 대부분의 조례에서도 “장애인평생교육기관” 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용어의 정의를 단일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¹⁶⁾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안 제2조제3호가 사용하고 있는 약칭의 방식이 적절하지 않고 약칭하는 문구가 더 길어 약칭의 필요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시설등”에 관한 정의로 문구를 간략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¹⁷⁾.

평생교육시설),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8조(지식·인력 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16)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경기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17) 예시) “평생교육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안 제4조·제5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평생교육법」을 적용한다.

제5조(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 ①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학습지원인력, 이동지원, 정보접근지원 등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 제4조는 다른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문으로, 동 제정안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평생교육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두 법률 간의 충돌을 피하고 있음.

한편, 제정안 제5조의 경우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것인데, 해당 규정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과 장애인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한편, 장애인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는 권리가 발생하여 권리·의무 관계에 변동이 있게 됨.

즉, 안 제5조는 실체적 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으로서 실체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1장 총칙이 아니라 다른 장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안 제5조의 내용을 고려

할 때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평생교육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4장 “장애인평생교육기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의 예산 지원을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던 제21대 국회 조해진의원안 및 유기홍의원안과 달리¹⁸⁾ 제정안 제5조제3항은 예산 지원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 등의 우려를 반영하여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

18)

조해진 의원안	유기홍 의원안
제5조(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 ①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학습지원인력, 이동지원, 정보접근지원 등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u>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u>	제29조(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 ①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보조인력지원, 이동지원 등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u>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u>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6조)

제정안	「평생교육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u> ④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담당할 기구 및 공무원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u>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 「평생교육법」 제5조는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2항과 제3항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규정으로서 각각 제정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과 그 내용이 중복됨.

제정안 부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는 「평생교육법」의 규정 중 제정안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개정하고 있는데 「평생교육법」 제5조를 개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제정안의 심사과정에서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나. 제2장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제7조~제14조)

(1) 기본계획·시행계획(안 제7조·제10조)

제정안 제7조는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장애인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0조는 시·도지사가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도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평생교육법」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평생교육과 장애인 고용 · 복지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투 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정책에 대 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제도 개선 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 다)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연도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시 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 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장애 인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 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 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도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u>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u> 6. <u>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 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 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도지사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 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 을 평가하여야 한다.
--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 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정안은 현행 「평생교육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장애인평생교육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현행 「평생교육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안 제3호)과 “장애인평생교육과 장애인 고용·복지의 연계에 관한 사항”(안 제4호)이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추가하고 있음.

시행계획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관련된 계획, 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의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제정안 제10조에서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연도별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시도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장애인 평생교육정책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평생교육법」 제9조제2항 각 호 중 제5호와 제6호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바, 제정안은 부칙규정을 통해 제9조제2항제5호와 제6호를 삭제하고 있음.

(2) 통계 · 실태조사 등(안 제8조)

제정안 제8조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매년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도록 하고(제1항), 장애인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제2항),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임(제4항).

제8조(장애인평생교육 통계 ·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 ① 교육부장관은 장애인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매년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현황,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운영 및 지원 현황,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만족도 등 장애인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의 장애실태조사와 연계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통계조사와 제2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현황과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와 연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 등의 보고는 행정기관 등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국회나 상급기관의 업무감독·통제 또는 평가의 수단인 동시에, 해당 기관의 입장에서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홍보 등을 통하여 정책의 실효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¹⁹⁾.

한편, 제정안의 자구와 관련하여, 안 제8조제2항 후단은 교육부장관이 장애인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장애실태조사와 연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실태조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1조²⁰⁾에 따른 장애복지실태조사”로 해당 근거 법률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안 제8조제4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역시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2조²¹⁾에 따른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19)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법제실, 2024, p. 720.

20)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위원회 · 협의회 등(안 제9조)

제정안	「평생교육법」
제9조(장애인평생교육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0조에 따른 진흥위원회에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평생교육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는 진흥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평생교육·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도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한다)를 둔다. 다만,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협의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협의회가 시·도협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시·도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협의회 의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장애인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⑤ 시·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시·군·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①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는 지역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 소속으로 시·군·구 장애인평생교육협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② 시·도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협의회 의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⑤ 시·도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①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가 시·군·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시·군·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군·구 장애인평생교육협회의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특수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장애인 관련 단체장, 장애인 사회복지 전문가, 장애인 재활치료 전문가, 관할 지역 내 장애인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시·군·구 장애인평생교육협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군·구협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시·군·구협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제정안 제9조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0조에 따른 진흥위원회에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평생교육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정안 제11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정안 제12조는 시·군·구에 지역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군·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평생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제12조와 제14조에 따라 시·도평생교육협의회 및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바,

제정안은 유사·중복 위원회의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 분과위원회를 진흥위원회에 설치하고, 시·도협의회와 시·군·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을 유사한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11조와 제12조 각각의 단서 조항은 각 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정안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시·도평생교육협의회 및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건과 후건의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통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 제3장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제15조~제17조)

제15조(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국가는 장애인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교육 및 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 개발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및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운영) ①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평생교육 관련 기관을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시·도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시·도진흥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장애인평생교육의 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장애인평생교육 상담
3.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4. 제21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지원
5. 해당 지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 간의 연

계체제 구축

6.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군·구평생학습관 또는 시·군·구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시·군·구 장애인평생학습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장애인평생교육 상담
3. 장애인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해당 지역의 시·군·구평생학습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군·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정안은 장애인평생교육 진흥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단위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안 제15조)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안 제16조), 그리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시·군·구평생학습센터”(안 제17조)를 두도록 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를 구체화하고 있음.

한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현행 「평생교육법」 제19조의 22)에 근거하여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소속으로 설치·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정안은 부칙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만약 제정안이 기 설치·운영 중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별도로 새로운 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근거 조문을 이관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종전에 「평생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이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로 본다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두어 그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 따라 국가 단위 기관과 더불어 시·도, 시·군·구로 이어지는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가 설치·운영된다면 지역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2) 「평생교육법」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교육 및 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10.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평생교육법」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²³⁾와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²⁴⁾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에서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업무와 프로그램 운영, 사업 수행 등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바,

제정안 제16조제1항과 제17조제1항의 후단은 각각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

23) 「평생교육법」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국가 및 시·군·구 간 협력·연계
6.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7.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8. 평생교육 관계자의 역량강화 지원
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생학습관 등의 기관을 시·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및 시·군·구 장애인평생학습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다만, 전단의 규정만으로도 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후단의 규정을 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간결한 조문 정리를 위하여 각 조항의 후단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안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각 센터의 지정·운영 의무 주체와 관련하여, 「평생교육법」 제20조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지정·운영 주체를 “시·도지사”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 경우 시·군·구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 주체를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하고 있어 제정안과 차이가 있음.

라. 제4장 장애인평생교육기관(제18조~제23조)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안 제18조)

제정안	「평생교육법」
제1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제3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또는 폐쇄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제정안 제18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은 현행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부칙 규정을 통해 「평생교육법」 제20조의2를 삭제하는 한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자의 조건을 규정하고²⁵⁾, 시설 운영 경비의 지원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포함하고 있음.

25) 「평생교육법」의 경우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제2항에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일괄 규정하고 있음.

(2)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안 제19조)

제19조(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에게 학위 취득·학력보완 및 학교교육에 준하는 기회 제공과 자립생활·취업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자격,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형태, 변경등록, 신고 등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8조의3을 준용한다.

③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지원, 의사소통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지원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관련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을 갖추 수 있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확충 및 인력 배치 등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기준에 미달되지 아니 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 제19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게 하며(제2항),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지원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운영 기준에 미달되지 아니 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제4항).

「2023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인구의 대졸 이상·고졸·중졸 이하의 비율은 각각 40.3%, 37.2%, 22.5%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비해 장애인의 경우 대졸 이상 비율이 14.1%에 불과하고 고졸이 31%, 중졸 이하의 비율은 54.9%에 달함.

이에 제정안에 따라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제도화할 경우 전체 인구의 교육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학력을 취득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유지에 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장애인 문해교육의 실시 등(안 제23조)

제23조(장애인 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문해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도교육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이 운영하는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장애인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장애인문해교육센터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에 따른 국가문해교육센터를 국가장애인문해교육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내 시·도장애인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에 따른 시·도문해교육센터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시·도장애인문해교육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초·중·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배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23조는 장애인 문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으로, 장애인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제1항),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제2항), 국가장애인문해교육센터 및 시·도장애인문해교육센터의 설치·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제3항 및 제4항),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제5항) 등이 규정되어 있음.

제정안에서 의도하는 “문해교육”의 의미는 안 제2항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해당 용어는 제1항에서도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법률 문언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법」과 같이 정의 규정에 “문해교육”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²⁶⁾).

아울러, 해당 규정은 「평생교육법」 제6장²⁷⁾ 중 제39조부터 제40조까지의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나, 「평생교육법」과 달리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초·중·고등학교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평생교육법」 제40조²⁸⁾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²⁹⁾에서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자 수준의 학력만이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음. 이는 「평생교육법」상의 문해교육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

26)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7) 「평생교육법」 제6장은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제40조(문해교육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40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로 구성됨.

28) 「평생교육법」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5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 ① 초등학교·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학습자가 법 제40조에 따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제70조제1항제3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의 수준을 갖추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해당하는바,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하기에는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제정안 제23조에 따른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에 「평생교육법」과 달리 고등학교 학력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하기 위하여는 제정안 제2조에서 “문해교육”의 수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평생교육법」 제40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한 후 개별 프로그램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마. 제5장 장애인평생교육사(제24조~제30조)

(1) 장애인평생교육사 신설·배치 및 채용(안 제24조·26조)

제24조(장애인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의 부여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생교육”은 “장애인평생교육”으로, “평생교육사”는 “장애인평생교육사”로 본다.

제26조(장애인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과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장애인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평생교육사 배치·채용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 제24조는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제정안 제26조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과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이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장애인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2항). 또한, 제정안 제26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장애인평생교육사의 배치·채용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제3항).

현재 「평생교육법」 제24조³⁰⁾ 및 제26조³¹⁾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

30)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에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⑥ (생략)

31) 「평생교육법」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격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생교육기관, 학교 등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고 있으나, 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장애인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 제도를 별도로 신설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참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³²⁾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사(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음.

다른 시·군·구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안 제29조)

제29조(장애인 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정안 제29조는 국가로 하여금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를 위하여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평생교육법」은 제15조³³⁾에서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3) 「평생교육법」

제15조(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정된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지원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2021년 6월 8일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제15조에 따른 “평생 학습도시” 외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별도의 근거 규정(제15조의2)³⁴⁾이 신설 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음.

제정안은 현행 「평생교육법」 제15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내용을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현행 「평생교육법」 제1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내용이 제정안 제29조로 이관됨에 따라 제정안은 부칙 제3조³⁵⁾에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제정안 시행 당시 종전의 「평생교육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제정안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안 제5조는 「평생교육법」 제15조의2 삭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34) 「평생교육법」

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⑤ 국가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제정안 부칙 제3조(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평생교육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본다.

사. 제6장 보칙(제31조~제37조)

(1)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안 제31조 및 제32조)

제31조(행정처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자·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4.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지도·감독)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정안 제31조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자 및 운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 안 제31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감이 그 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장애인평생교육과정을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장애인평생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제정안 제32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에게 부여되어 있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주체 역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처분과 지도·감독의 권한 주체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으로 정하여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는 그 자체로 권리능력을 갖지만 스스로 행위를 할 수는 없고 행정작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을 두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안 제18조 및 안 제19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감이 아닌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바,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의 주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평생교육법」의 경우에도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와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지정·운영 주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42조(행정처분)과 제42조의2(지도·감독) 조항에서는 권한 주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하고 있음³⁶⁾.

36)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42조(행정처분)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지도·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인가·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아. 부칙

(1)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칙 제5조)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4항 중 “평생교육·장애인교육과”를 “평생교육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전문가, 장애인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을 “전문가,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전문가, 장애인평생교육 관계자, 관할”을 “전문가, 관할”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2항제3호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제3항 중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을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으로 한다.

제정안은 현행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규정을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 이관하면서 현행 「평생교육법」상의 해당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 있음.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은 효율적인 개정방식이기는 하지만 다른 법률의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국회 각 위원회의 심사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하여야 함. 특히 제정안과 같이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던 사항 중 일부사항

을 해당 법률에서 규율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을 추가하려고 할 때 그 다른 법률의 정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³⁷⁾.

아울러,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제정안은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제정안의 입법목적 및 적절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³⁸⁾.

문 의 처
02)6788-5186

37)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법제실, 2024, p. 912.

38) 제정안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참고